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24
----------	-------

발의연월일 : 2026. 1. 29.

발 의 자 : 김기웅 · 서명옥 · 김재섭
박충권 · 박형수 · 이인선
최수진 · 김기현 · 이만희
김 건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제품의 제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폐기물부담금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멀티슈 등 합성수지를 재료로 하는 1회용 플라스틱 제품은 사용 후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하수관로 막힘 등 심각한 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아 부담 수준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회용품의 정의에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활용 가능

성, 분리배출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형평성 및 합리성에 기반한 부담구조를 재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5호 및 제1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것”을 “것(합성수지를 재료로 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기의 제조업자”를 “용기(1회용품을 포함한다)의 제조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 가능성, 분리배출의 용이성,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것</u> 을 말한다.	15. ----- ----- ----- ----- <u>것(합성수지를 재료로 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한다)</u> -----.
16. · 17. (생략)	16. · 17. (현행과 같음)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 <u>용기의 제조업자</u>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 ----- ----- ----- ----- ----- ----- ----- ----- ----- <u>용기(1회용품을 포함한다)의 제조업자</u> ----- ----- -----

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 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1. ~ 3. (생략) ② ~ ⑧ (생략) <u><신설></u> <u><신설></u>	-----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현행과 같음) ⑨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 활용 가능성, 분리배출의 용이 성,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환 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 여 폐기물부담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u> ⑩ <u>제9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의 산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u>
---	---